

## [시행 2020. 7. 8.] [법률 제17199호, 2020. 4. 7., 일부개정]

보건복지부 (노인정책과 - 총괄) 044-202-3452, 3457

보건복지부 (노인정책과 - 인권교육,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노인 인권·학대 관련사항) 044-202-3458, 3463

보건복지부 (노인지원과 - 노인여가복지시설) 044-202-3478, 3479

보건복지부 (요양보험운영과 - 노인의료복지시설) 044-202-3513, 3516

보건복지부 (요양보험운영과 - 재가노인복지시설) 044-202-3511, 3521

26 ( )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·능원·박물관·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.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

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<제17199호, 2020. 4. 7.>

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.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